봉평면문화센터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49

제안연월일 : 2026. 10. .
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봉평면문화센터의 시설물 관리·운영 지속성 및 전문성 제고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제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○ 위탁시설: 봉평면문화센터
○ 수 탁 자: 평창군시설관리공단
○ 위탁내용: 봉평면문화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
○ 위탁기간: 2027. 1. ~ 2031. 12. (5년)

나. 추진근거

○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
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2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 제19조의5
○「지방공기업법」제2조, 제71조, 제76조
○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제5조, 제7조
○「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9조
○「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」제12조

다. 위탁시설 개요

○ 시 설 명: 봉평면문화센터

○ 위　　치: 평창군 봉평면 기풍3길 7 (창동리 396-39번지)

○ 시설현황: 1동 915.25㎡

- 지상 1층: 목욕탕(314.65㎡)
- 지상 2층: 체력단련장(270㎡)
- 지상 3층: 소공연장, 동아리실 등(270㎡)
- 옥 탑 (135㎡ 면적제외)
- 부대시설: 기계실(60.6㎡)

라. 그간 운영 및 예산 지원현황

○ 운영현황

- 수 탁 자: 봉평면주민주식회사
- 수탁기간: 2024. 1. ~ 2028. 12. (5년)
- 운영인력: 5명(사무국장 1, 시설관리4(남자2, 여자2)) / 2개조 2교대
- 운영시간: 06:00 ~ 21:00 / 휴관: 목·일요일, 설연휴, 추석연휴
- 수입 및 지출 현황(2026. 8. 31. 기준 / POS기 기준)

(단위: 천원)

구　분		2024년	2025년	2026년
이　월		-	**26,177**	**14,798**
수 입	**합　계**	**256,504**	**270,235**	**201,054**
	위 탁 금	72,000	72,000	72,000
	판매수입	184,504	198,235	129,054
지　출		**230,327**	**281,614**	**205,037**
잔　액		**26,177**	**14,798**	**10,815**

※위탁금: 원가계산에 따른 수입 - 지출 비용의 차액 지급

❍ 예산 지원 현황(2026. 9. 30. 기준)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4년	2025년	2026년	비 고
합 계	82,200	92,988	131,583	
위탁금	72,000	72,000	118,000	봉평면주민주식회사에 지급
수리비	10,200	20,988	13,583	봉평면사무소 예산 재배정

※2026. 2회 추경에 위탁금 46,000천원 추가 편성

마. 수탁자 선정방식: 수의계약

○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○ 봉평면문화센터 위탁운영은 「지방공기업법」제2조(적용 범위) 제1항 제9호에 따라 “공용·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”에 해당되므로 지방공단 위탁 가능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(단위: 천원)

구 분	금 액	산출내역	비 고
합 계	329,633		
인 건 비	179,459	4명(무기계약 2명, 기간제 2명) -기본급, 연차수당, 정근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 등	
사무관리비	32,520	운영 소모품, 무인경비·전기·소방·청소 용역, 정수기·비데 임차료, 목욕탕 판매 상품 등	
공공운영비	53,954	공과금(전기, 상하수도, 통신비 등), 유류대	
시 설 비	30,000	건물 외벽공사	
자산취득비	33,700	고압세척기, 건조기, 수납장, 헬스기구, 포스기	

사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○ 기존 수탁자의 위·수탁 해지 요청에 따라 전문적·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주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

○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대화목욕탕을 비롯한 평창군의 주요 공공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해 오고 있는 전문기관임

○ 따라서,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는 물론 운영의 유연성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봉평면문화센터의 관리·운영을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

아. 기대효과

○ 봉평면문화센터는 1995년도에 준공 된 봉평중·고등학교를 2017년 농촌중심지활설화사업으로 리모델링한 건물로 전문기관에의 관리·운영 위탁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농촌 활력을 증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**지방자치단체의 장은**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**법인 ·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**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**지방자치단체의 장은**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 할 수 있다**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 · 성질 ·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**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**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**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**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**

□ 지방공기업법
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(이하 "지방직영기업"이라 한다)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**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** 각각 **적용한다**.

9. 주택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)·토지 또는 공용·**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**

제71조(대행사업의 비용 부담) ① **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**,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제76조(설립·운영) ② 공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, 제53조제1항, 제56조제1항 및 제3항, 제57조, 제58조, 제58조의2,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,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, 제64조, 제64조의2,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, 제65조, 제65조의2, 제66조, 제66조의2, 제68조, 제69조, **제71조**,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, 제72조 및 제73조,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**이 경우 "공사"는 "공단"으로, "사장"은 "이사장"으로, "사채"는 "공단채"로 본다.**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5조(위탁조건 및 기간)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 ·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충분조건: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
2. **필요조건: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**

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(이하 "위탁기간"이라 한다)은 3년 이내로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**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**로 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.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□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9조(사업)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**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**

□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

제12조(위탁운영)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관리·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읍·면장에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.